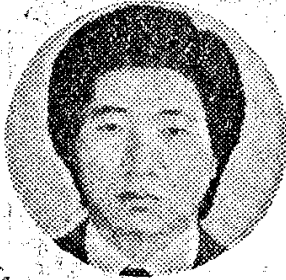


盧武鉉 법률상담 코너

불명예제대, 해외 출국은



【문】53년에 군에 입대, 실화사건으로 군교도소에서 만기출감하여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자녀들의 취직이나 해외출국에 지장이 없는지요.
 <崔순석·부산西구下端동>

【답】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제 7조에 의하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없이 형의집행을 종료하거나 그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각호의 기간이 경과한때는 그형은 실효된다.

◇노무현씨◇
 상의 형을 받음이없이 형의집행을 종료하거나 그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각호의 기간이 경과한때는 그형은 실효된다.

①징역 또는 금고10년 ②벌금은 3년 ③구류·과료는 1년이므로 귀하는 석방된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하등 제재를 받을수 없고 귀하의 자식또한 마찬가지이며 아울러 가사 실효가 되지않을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귀하의 자식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신이상 男便과 離婚

【문】45세의 주부입니다. 시집은지 22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마음편히 지낸날이 없습니다.

남편은 정신이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시집이나 옆집에 가서 조금만 늦어도 손찌갑과 욕설을 해왔습니다.

참다못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만 이럴 경우 법적 이혼이 가능한지요.

<宋금자·慶南馬山시檢原동>

【답】민법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민법제 840조제 3호 및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있음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도 같이 청구할수 있습니다.

事實婚상에서 離婚을

【문】30대의 주부로 현재 남편과는 혼인신고없이 자식들을 낳고 1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려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金차순·慶南梁山동>

【답】귀하는 현재 남편과는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혼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어느 한쪽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민법상 위자료 배상책임은 있습니다.

위자료액수는 쌍방향의가 될 경우는 예외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법원에 제소될 때는 어느 한쪽이 이혼으로 받을 정신적 타격·재산정도·학력·가정 사정등 제반 사정을 종합판단하여 액수를 정하는 판결이 선고됩니다.